

원자력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1.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또는 판매사업 허가신청시 제출서류 변경
 근거규정 : 제77조(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허가신청)

- 제77조의3(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사업허가신청)
- 방사선안전보고서 제출

2.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신고대상의 변경
 ○근거규정 : 제79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신고대상)

중전 : 사업소마다 연간사용량 300mCi이하 또는 기기장비된 것은 1Ci이하

○현행 : 밀봉방사성동위원소로서 정상사용 중에는 파손의 우려가 없고, 방사능표지가 용기 또는 장치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것

1) 교정용장치에 내장된 경우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MBq 이하이고, 사용중에는 표면방사선량률이 500 μ Sv/h이하이며,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표면방사선량률이 1 μ Sv/h이하일 것

2) 기타 장치에 내장된 경우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수량이하이고, 표면방사선량률이 10 μ Sv/h이하로서 방사성물질의 접촉을 방지하는 일체형장치일 것

3.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신고대상의 변경
 ○근거규정 : 제79조의3(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신고대상)

○중전 : 사업소마다 자체차폐된 장치로서 최대사용전압이 170kV이하이고, 차폐체외부 표면에서의 방사선량률이 0.75mR/h이하의 것

○현행 : 사업소마다 자체차폐된 장치로서 가속관의 최대전압이 170kV이하이고, 표면 방사선량률이 10 μ Sv/h이하의 것

4. 정기검사의 시기 조정

○근거규정 : 제83조(정기검사의 시기), 별표2

○중전 : 검사주기 1, 2, 3, 5년

○현행 : 신고사용자에 대한 정기검사면제, 검사주기 1, 3, 5년

5.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기준 조정

○근거규정 : 제86조(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기준등), 별표3

○중전 : 신고사용자의 경우 교육훈련이수자

를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

○현행 : 신고사용자의 경우 방사선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면제

6. 운반·포장검사 방법 변경, 서면심사대상 운반신고 및 운반검사 삭제

○근거규정 : 제100조(운반·포장검사의 대상 및 주기)

중전 : 운반신고한 것에 대하여 운반검사 신청
 ○현행 :

1)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 폐기업자·핵연료주기사업자·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을 전문으로 하는 자 : 매 1년

2) 방사성동위원소 판매업자

- 밀봉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판매량이 370TBq이상 또는 개봉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판매량이 37TBq이상 : 매1년

- 밀봉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판매량이 370TBq미만 또는 개봉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판매량이 37TBq미만 : 매3년

3) 사용후핵연료 또는 포장하기 어려운 대형기계장치등을 운반하는 자 : 운반신고할 때마다

4) 위호외의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 : 운반 신고할 때마다

7. 운반용기등의 승인대상 변경

○근거규정 : 제100조의3(운반용기등의 승인대상범위)

○중전 : 특수형방사성물질, A/BM/BU형 운반물, 제1종/제2종/제3종 핵분열성운반물의 사업소의 운반용기

○현행 : 특수형방사성물질, BM/BU형 운반물, 제1종/제2종/제3종 핵분열성운반물의 사업소의 운반용기

8. 역무제공업 등록절차 (신설)

○근거규정 : 제105조의2(역무제공업의 등록),

제105조의3(역무제공업등록사항의 변경)

○현행 : 역무제공업 사업개요서, 방사선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설명서등 제출



9. 부칙

○근거규정 : 제2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신청등에 따른 경과조치)

-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신청 또는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77조 내지 제77조의4, 제79조의2 및 제79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까지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근거규정 : 제3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RI 또는 RG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중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으로 되는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되,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종전의 허가증을 반납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함

○근거규정 : 제4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RI 또는 RG의 사용신고를 한 자중 개정규정에 의하여 허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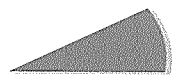
상으로 되는 자는 이 규칙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종전의 신고필증을 반납하고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함

- 이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되,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에 관한 교육훈련 이수자를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음

○근거규정 : 제5조(허가사용자의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규칙에 의하여 허가사용자가 받는 정기검사의 주기는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함

○근거규정 : 제4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이 인허가 규제 철폐 쪽으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해외과학동정

조종사들이 원전 작업자 보다 많은 방사선을 받는다

국제선에서 탑승하는 조종사와 승무원들은 일반적으로 원자력발전소에서 종사하는 업자에 비하여 연간 방사선 피폭량이 세배에 달한다고 일본의 일간지가 보도하였다. 일본의 비행승무원 조합동맹이 지난 6년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장거리를 운항하는 국제선의 승무원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우주의 방사선에 노출되어 예상보다 많이 피폭된다고 일본의 매일경제 신문이 보도하였다. 이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연간 700 800시간을 탑승하는 승무원들은 평균적으로 3mSv의 방사선에 피폭되지만 일본 과기청은 원전작업 종사자의 연간 방사선피폭 허용선량을 50mSv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선의 승무원들은 정부의 연간 방사선허용치보다는 훨씬 적은 양의 방사선을 받지만 일반인들의 예상과는

달리 원전종사자의 평균 피폭량보다 세배나 많은 방사선의 피폭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뉴욕에서 동경을 운항하는 노선과 같은 장거리 운항 승무원들은 우주 방사선에 가장 심하게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신문은 북극 부근을 지나가는 경로가 우주의 방사선 선량을 가장 크게 받게 하는 지역이라고 설명하였다. 지구상의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자연 방사선을 받게 되며 특히 일부 고산지대의 사람들은 연간 자연방사선 피폭량이 평균 원전 종사자의 피폭량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의 대기와 자장은 대부분의 우주방사선을 차단하지만 10,000미터(32,800피트) 고도의 방사선량은 지상과 비교할 때 100~20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Reuterhttp:// www.infoseek.com 97.10.11]